

제 1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의결 절차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1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사(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제19대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2017. 3. 10.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로 치러졌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 2017년 5월 9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탄핵 결정 10일 후인 2017년 3월 20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2017년 6월 8일까지 약 80일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시에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구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 2014. 7. 4.	2014. 6. 4.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5. 31. ~ 2014. 8. 29.	2014. 7. 30.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8. 30. ~ 2014. 11. 28.	2014. 10.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2. 28. ~ 2015. 5. 29.	2015. 4.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8. 29. ~ 2015. 11. 27.	2015. 10.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12. 14. ~ 2016. 5. 13.	2016. 4. 13.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 2. 13. ~ 2016. 5. 13.	2016. 4. 13.	2015. 8. 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는 재보궐선거 1회로 축소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2. 11. ~ 2017. 5. 12.	2017. 4. 12.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7. 3. 20. ~ 2017. 6. 8.	2017. 5. 9.	2017. 3. 10.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에 대통령선거 실시

2. 구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천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언론인단체) 및 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성명	이력	추천단체	비고
위원장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위원장	윤원구	(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이양호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더불어민주당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자유한국당	
	김 당	(전)오마이뉴스 편집주간	국민의당	
	박철규	명지대 초빙교수	바른정당	
	이은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언론학회	
	강신업	(전)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김화성	(전)동아일보 부국장	한국신문협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 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3.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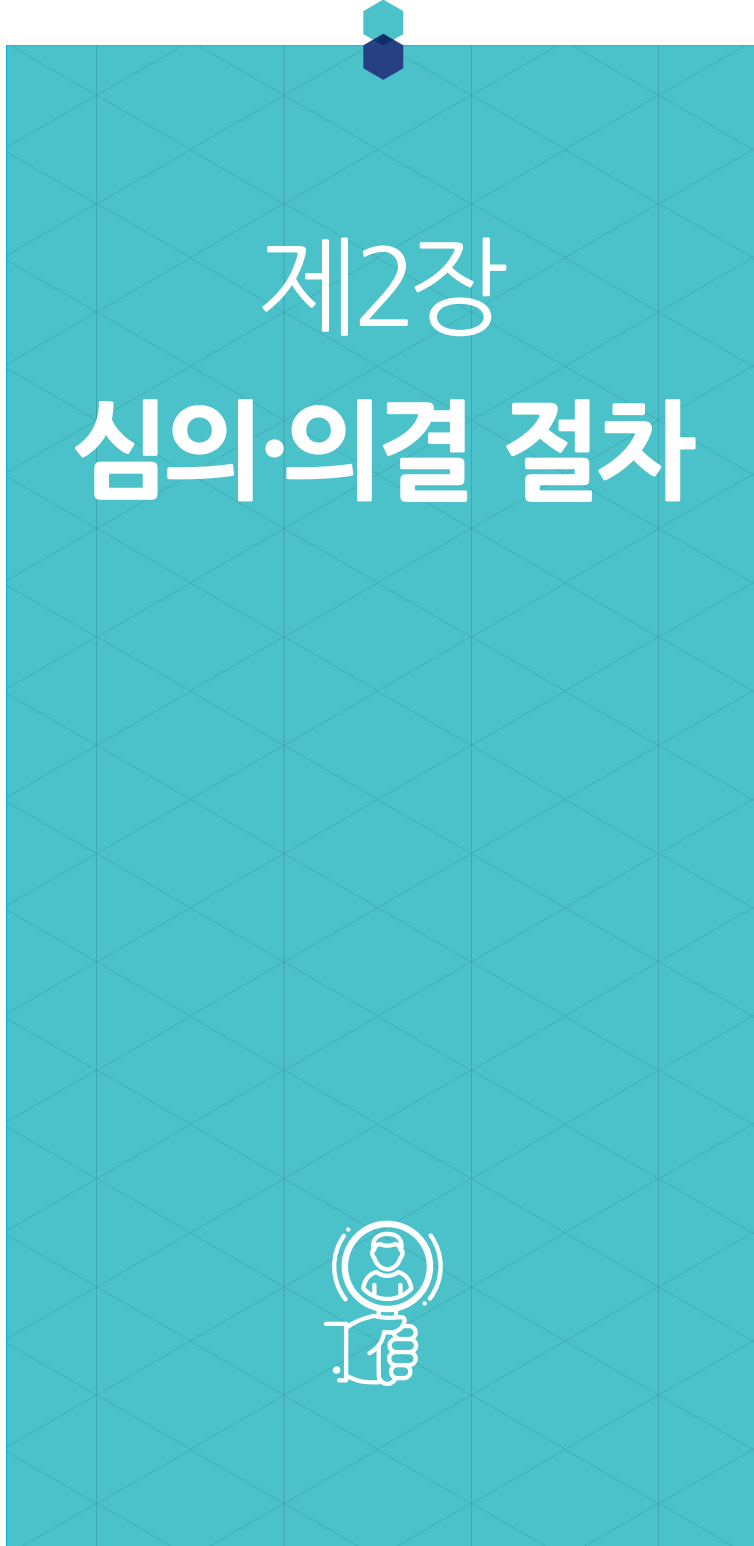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재조치 관련규정]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정정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반론보도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	
경고결정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권고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사진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화성 위원, 이양호 위원, 박철규 위원, 강신업 위원, 한희원 위원, 김당 위원, 권우동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이은주 위원, 박용상 당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고승우 심의위원장, 윤원구 부위원장>



1. 자체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심의 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를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보도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참고하여 심의한 후 불공정한 보도라고 판단하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제8조의3제6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해당 보도, 시정요구인의 신청취지 및 언론사 측 의견진술을 토대로 심의한다. 시정요구인의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시정요구인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한다. 시정요구 등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결정 이후의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4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이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개정

언론중재위원회는 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을 개정하였다. 심의위원회 제재조치 중 ‘사과문 게재’를 삭제하고(제15조제1항제1호), 제재조치를 열거한 조항에 ‘권고’를 포함하였다(제15조제1항제5호,제2항).

또한 제재조치 시 언론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및 제재조치 불이행 시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범위를 수정하였다(제17조제2항,제3항).

※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심의의결)</p> <p>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p> <p>1. 사과문 게재 2 ~ 4. (생략) 5. 경고 또는 주의</p> <p>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심의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15조(심의의결)</p> <p>① ----- ----- -----.</p> <p>1.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p> <p>② ----- -----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p> <p>① (생략)</p> <p>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결정을 해당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이행 사실을 정기간행물등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조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p> <p>③ -----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3.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심의위원회는 위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개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심의위원회 제재조치 중 '사과문 게재'를 삭제하고(제13조제1항제1호), 제재조치를 열거한 조항에 '권고'를 포함하였다(제13조제1항제8호, 제2항).

※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제재결정 등)</p> <p>① (생략)</p> <p>1. 사과문 게재</p> <p>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7. (생략)</p> <p><신 설></p> <p>② 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제재조치 외에 권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3조(제재결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삭 제></p> <p>2~7. (현행과 같음)</p> <p>8. 권고</p> <p>선거기사의 내용이 법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언론사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 ----- -----기타 필요한 조치-----.</p> <p>③ (현행과 같음)</p>